

엄홍길 기념관 및 전시관 건립부지
고성도시관리계획(문화시설)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

의안번호	452
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4. 3. 11

제 출 자 : 고성군수

☑ 제안이유

- 지역 출신 산악인 엄홍길대장의 스포츠정신과 도전정신을 후세에게 알리고 지역민의 여가·교육·스포츠 활용장소로 개발하여 고성의 명승지로 개발하고자 함.
- 지역주민에게 스포츠(산악) 행사참여 및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고, 청소년의 극기훈련 및 정신수양 장소로 활용
- 비교적 경사가 완만한 농경지를 이용하여 기념관, 전시관(엄홍길 및 등산용품)을 건립하여 등산 스포츠 활성화와 지역민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도모하고자 함.
- 레포츠산업의 확산과 청소년들의 도전정신 및 근력개발을 위한 교육장소로 활용
- 향후 거류산 등산로와 연결을 통한 등산 시스템 구축으로 도내 등산 스포츠 명승지로 개발
-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(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) : 도시관리계획입안시 주민의견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할 시 이를 반영

☑ 청취내용

- 문화시설지구지정면적 : 17,347㎡ (5,247평)
 - 기념관 : 1,603㎡ (약 485평)
 - 전시관 : 2,510㎡ (약 759평)
 - 공연장(암벽장 및 광장) : 1,988㎡ (약 601평)
 - 도로 및 주차장 : 4,729㎡ (약 1,431평)
 - 녹지 및 기타시설 : 6,517㎡ (약 1,971평)

☑ 청취경위

- 2002. 9월 : 중기재정계획 반영
- 2002.10월 :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
- 2003. 8월 : 기본계획 완료
- 2003.10월 :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
- 2003.11월 : 전시물품 엄홍길과 협의
- 2003.12월 : 매입 토지 및 지장물 현장 조사
- 2004. 1월 : 고성도시관리계획(문화시설)결정 열람 공고
- 2004. 3월 : 지방의회 의견 청취

붙임 엄홍길 기념관 및 전시관 건립부지 고성도시관리계획(문화시설)결정안 1부 끝.

고성도시관리계획(문화시설)결정안



2004. 3.

 **고 성 군**

1 계획의 개요

1. 계획의 배경

- 지역주민의 소득증대, 주5일 근무제의 시행등으로 여가시간이 증대에 따라 각종 생활·체육·문화시설에 대한 주민참여 욕구 증가
- 지역출신 산악인 엄홍길 대장의 지역 사회의 기여와 고성군의 위상정립,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 후세의 체육·문화제업의 장소로 개발하고자 함

2. 계획의 목적

- 지역 출신 인물인 산악인 엄홍길대장의 스포츠정신과 도전정신을 후세에게 알리고 지역민의 여가·교육·스포츠 활용장소로 개발하여 고성의 명승지로 개발하고자 함.
- 지역주민에게 스포츠(산악) 행사참여·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고, 청소년의 극기훈련 및 정신수양 장소로 활용
- 비교적 경사가 완만한 농경지를 이용하여 기념관, 전시관(엄홍길 및 등산용품)을 건립하여 등산 스포츠로 활성화와 지역민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도모하고자 함
- 레포츠산업의 확산과 청소년들의 도전정신 및 근력개발을 위한 교육장소로 활용

3. 계획의 범위

가. 시간적 범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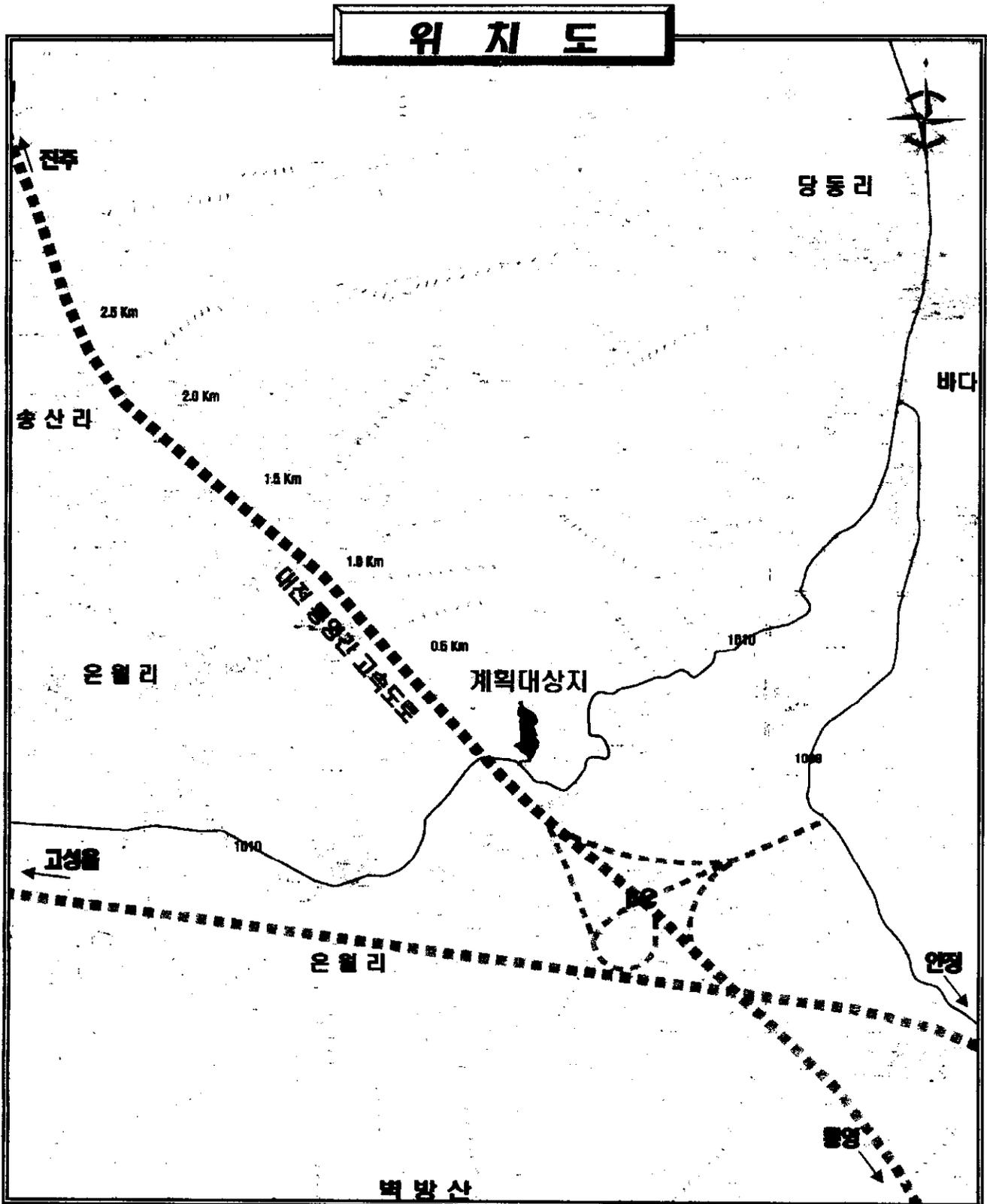
- 계획기준년도 : 2004년
- 계획목표년도 : 2007년

나. 공간적 범위

- 위 지 :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송산리 274번지 일원
- 면 적 : 17,347㎡

다. 내용적 범위

- 토지적성평가
- 도시계획시설결정(세부시설결정 포함)
- 교통성 검토
- 사전 환경성 검토
- 경관성 검토





계획대상지 현황

I. 대상지 현황

가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현황

- 대상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관리지역에 속함
- 도시계획시설의 결정,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6조~98조
문화시설의 설치기준에 부합되도록 개발계획 수립
(문화시설의 정의, 문화시설의 결정기준, 문화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등)

- 문화시설 결정조서 -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위치	면 적			최소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신설	1	문화 시설	거류면 송산리 일원	-	17,347	17,347	-	-

- 문화시설 세부시설결정조서 -

구 분	면 적			구성비(%)	비 고
	기 정	변 경	변경후		
계	-	17,347	17,347	100.0	
기념관	-	1,603	1,603	9.2	
전 시 관	-	2,510	2,510	14.5	
공연장(암벽장 및 광장)	-	1,988	1,988	11.5	
도로 및 주차장	-	4,729	4,729	27.2	
녹지 및 기타시설	-	6,517	6,517	37.6	

나. 고성문화현황

- 고성군의 주요관광지로는 당항포 국민관광지, 연화산 도립공원, 상족암 국립공원등 사적 및 자연관광지가 있음
- 고성지역은 기존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지 못하여 증가하는 관광수요증폭에 미흡한 실정임
- 고성지역의 관광자원은 사이버공룡테마파크 및 해양관광에 국한되어 있어 주말 레포츠관광 및 극기훈련장등이 필요한 실정임

- 문화시설 현황 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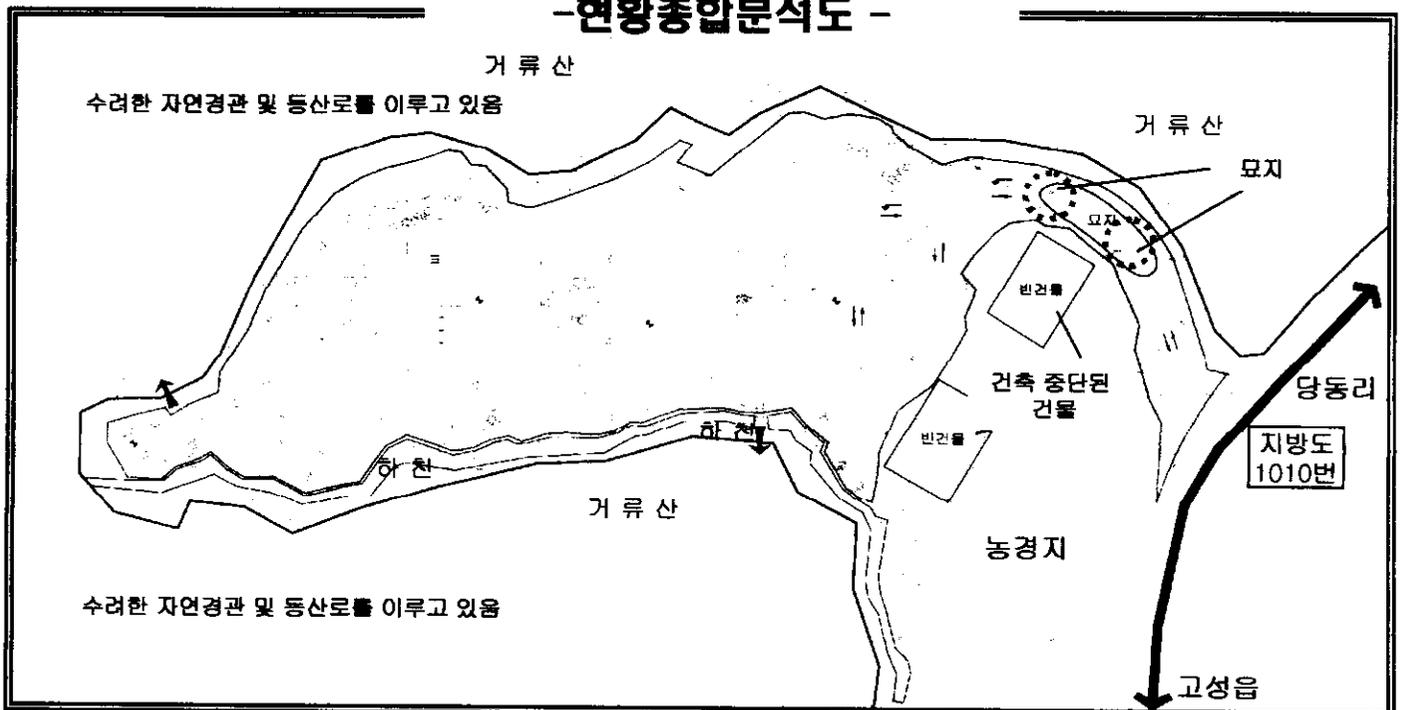
(단위 : 개소·인)

공공도서관		공연장		체육시설		
개소	좌석수	개소	수용인원	운동장	체육관	테니스장
1	352	1	148	1	1	1

다. 대상지 현황

- 대상지는 완만한 농경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설 예정지 주변에 건축중인 건물 2곳이 분포되어 경관상 문제시 되고 있음
- 대상지는 지방도 1010호선과 인접해 있으며 주위에 공사중인 대전-통영간 고속도로 I-C와 200m정도 떨어져 위치함
- 대상지 남서쪽으로는 하천이 유하하고 있으며 향후 문화시설 개발시 휴식지로 활용가능

- 현황종합분석도 -



2. 관련 법규 검토

가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법 률	내 용
법 제43호 도시계획법 제35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: 시설의 종류, 명칭, 규모, 위치 등을 관리계획으로 결정 · 문화시설로 설치

나. 도시계획시설의 결정,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

구 분	내 용
제 96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문화시설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설치하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함 - 공연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-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-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-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 -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제12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 진흥시설 및 문화산업단지 - 과학관 육성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
제 97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문화시설의 결정기준 -이용자가 접근하기 쉽도록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, 주거생활의 평온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할 것 -지역의 문화발전과 문화증진을 위하여 지역의 특성과 기능을 고려할 것
제 98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문화시설의 설치기준 -문화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공연법 ·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· 지방문화원진흥법 · 문화예술진흥법 ·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또는 과학관 육성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다. 문화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구 분	내 용
법제13조	문화시설의 종류
	공연시설 · 전시시설 · 도서시설 · 지역문화복지시설 · 문화보급전수시설 · 기타 문화시설

3 기본구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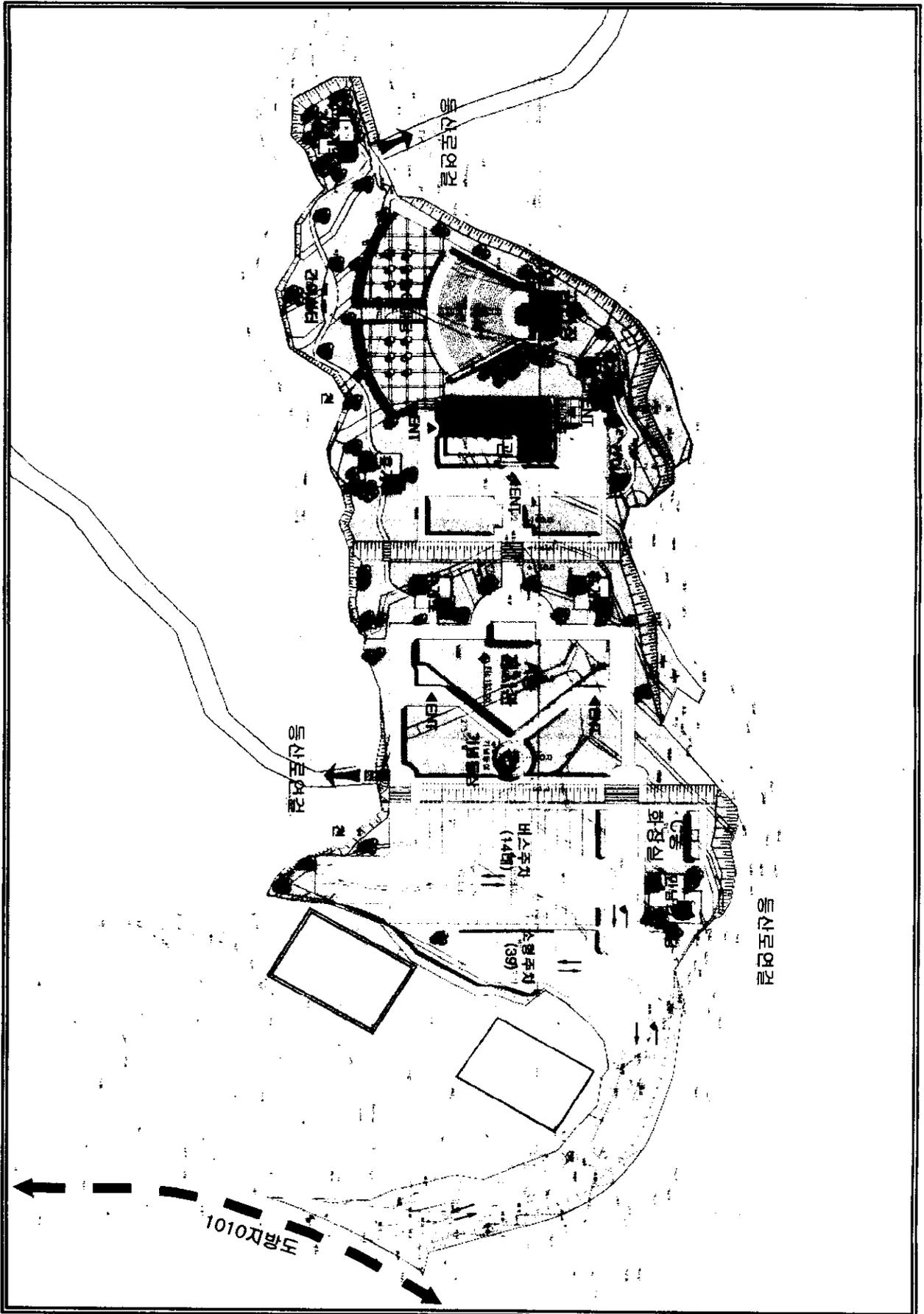
1. 전체
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관리지역에 속함
- 도시계획시설의 결정,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6조~98조 문화 시설의 설치 기준에 부합되도록 개발계획 수립
- 고성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문화시설의 설치[기념관, 전시관, 공연장(인공 압벽장)등], 청소년을 위한 문화시설의 설치, 문화생활영위를 위한 도시공간 시설의 설치[광장, 산책로, 야외휴식공간]
- 차후 등산객 증가에 따른 적절한 주차장 배치와 연계
- 등산대회 및 각종 행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야외 다목적 공간 확보
- 관광객 및 군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 구성

2. 기본구상

구 분	개발방향설정
면 적	- 17,347㎡(5,247평)
구역계설정	- 대상지 성격 및 시설의 입지,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범위 설정 (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일원화된 관리시설의 설치필요)
토지이용	- 도시계획시설기준에 부합되는 용지규모산정 - 기념관, 전시관, 공연장(인공압벽장)등의 문화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계획
교통·통신	- 시설을 감안한 주차장 확보 및 향후 등산객을 고려한 주차장 확보 - 지방도 1010호선의 통행을 저해하지 않는 내부연결동선 - 보행자 및 시설의 특성을 감안한 보행동선 및 등산로 계획
기 능	- 문화기능 및 교육기능
문제점	- 기존 건축 중단된 건축물보 인한 부지 부적합, 묘지이장필요

3. 개발계획



4 향후일정

- 2004. 2 : 용역완료(준공)
- 2004. 3 :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 공람공고
관련실과협의(농지, 국·공유지, 환경, 교통, 문화·관광)
- 2004. 4 : 지방의회 의견정취
- 2004. 4 : 농지전용협의 및 산지전용협의
- 2004. 4 : 군계획위원회 심의(군수결정사항)
- 2004. 4 :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

